**한국경제포럼** 제 16 권 제 2 호 1-36 DOI: 10.22841/kefdoi.2023.16.2.001

#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김 낙 년\*\*

#### 논문초록

이 글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박종규, 2013: 박정수, 2019: 김유선, 2019: 주상영·전수민, 2019: 이강국, 2019: 박정수, 2020)을 검토한 것이다. 기존연구는 이 논쟁에서 중요한 자영업의 소득에서 준법인을 빠뜨리고 자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영업잉여를 포함했는데, 이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종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와 CPI로 구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간의 갭이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벌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러한 갭은 사라진다. 1975년까지소급해 보면 1987년(민주화), 1997(외환위기), 2010년을 경계로 실질임금 증가가노동생산성보다 빨랐던 시기와 그 반대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났다. 전체 시기의 평균 증가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노동소득분배율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근래에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는 최상위소득집중도의 동향을 비교적 잘 설명하지만 보다 넓은 계층을 포함한 소득분배 지표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핵심 주제어: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33, E24, E25

투고 일자: 2022. 12. 27. 심사 및 수정 일자: 2023. 2. 9. 게재 확정 일자: 2023. 3. 10.

<sup>\*</sup> 이 논문은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재단)을 통해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AKS-2018-LAB-1250002).

<sup>\*\*</sup>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경제학과 명예교수, e-mail: nnkim@dongguk.edu

## I. 머리말

소득이 노동과 자본의 몫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는 기능적 소득분배는 19세기 고전경제학이 관심을 기울이던 문제였다. 당시에 부자들의 소득은 주로 소유 자산의 수익에서 나왔고 근로자는 생계를 노동소득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관심은 자연스러웠다. 20세기 이후에는 부자들이 노동소득을 얻게 되고 근로자들이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신고전파경제학에서는 두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통상 1로 가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과 자본으로의 분배율은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보았다.

많은 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노동(자본) 소득분배율이 하락(상승) 하였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크게 늘어났다. 예컨대 Piketty (2014) 와 Piketty and Zucman (2014) 은 20세기에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즉 β) 이 장기적으로 U자형의 추이를 보였으며, 근 래에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자본소득 비율(α) 도 상승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즉 요소간 소득의 분배율이 일정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소 득분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한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 예컨대 Elsby et al. (2013) 은 교역이나 국제자본이동과 같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선진국의 제품 공급망에서 노동집약적인 부분의 해외 조달(offshoring) 이 늘어난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는 자본재 가격의 하락을, Acemoglu and Restrepo (2018) 는 자본 편향적인 기술변화나 자동화와 같은 기술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예컨대 IMF (2017) 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국가별로 그 양상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비교에 널리 쓰이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들의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으로 가정하여 더한 전체 노동소득을 GDP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의된 노동소득분배율에는 여러 가지 측정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Bridgman (2018)은 노동보다 자본을 더 많이 쓰게 되면서 GDP에서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는데, 그것은 자본의 소득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Rognlie (2015)는 Piketty 등이 주장하는 소득 대비 자본 비율의 상승은 주로 주택의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이것은 택지의부족과 주택투자 비용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Koh et al. (2020)은 그동안 관찰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경제적 현

상이 아니라 국민계정의 회계상의 변화를 반영한 데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국민계정 에서 종래 소프트웨어, R&D 등의 IPP(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에 대한 지출 을 중간소비로 보았던 것을 투자로 바꾸면서 IPP의 수익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귀속시 켰는데,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추세는 사라진다고 주 장하였다.

자영업자의 노동소득 분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으로 가정한 것도 실태를 반영하 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가 많으며 특히 자영업의 비중이 높거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나라 경우 노동소득분배 율이 왜곡된다. Cette et al. (2019) 와 Gutiérrez and Piton (2020) 은 많은 나라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해 왔다는 통념에 도전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영업과 주택 의 부가가치 등을 제외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하면 뚜렷한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라에 따라서도 양상이 달랐다. 이것은 기술적인 요인 등으로 노동소득분배 율의 하락을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연구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능적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 다. 거기에는 밀접히 관련되지만 구분해서 논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빨랐는가에 관한 논점이다. 종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한 근로자 1인당 임금(또는 피용자보수)을 비교하여 외환위기(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 동생산성보다 임금의 증가율이 낮아 두 지표간 괴리가 커졌다는 주장이 있었다(박종 규, 2013; 김유선, 2015). 이에 대해 박정수(2019)는 두 지표의 디플레이터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으면 그러한 괴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에 대해 김유선(2019)과 주상영 · 전수민(2019)은 디플레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박정 수(2019)가 사용한 임금통계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을 사용한 데 문제 가 있으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로 바꾸면 두 지표 간의 괴리는 여전히 남는다고 반론하였다. 이강국(2019)은 이상의 두 지표는 일관된 비교가 어렵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영업자를 제외하여 근로자로 한정하고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 노동생산성을 비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도 두 지표 간의 괴리가 여전히 나 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수(2020)는 이강국(2019)의 노동생산성 정의에 서 분모에는 자영업자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포함된 반면 분자에는 그들의 생산한 영 업잉여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오류를 바로잡으면 두 지표의 괴리는 사라 진다고 반론하였다.

또 하나는 앞의 논점과 동전의 이면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에 관한 논점이다. 여기서도 노동과 자본의 몫이 혼합되어 있는 자영업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문제가 된다. 주상영·전수민(2014; 2019), 이병회(2015), 이강국(2019)은 자영업을 배제한 나머지 경제로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하였고, 그것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수(2020)는 이들연구의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을 보면 앞의 노동생산성의 정의에서 지적했던 자영업 처리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으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대해 본고는 다음의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들 연구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국민계정에서 가계의 영업이여로 간주하였는데, 거기에는 후술하듯이 자영업에 속하는 준법인의 소득이 빠져 있고, 자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영업이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자영업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것은 노동생산성이나 소득분배율의 추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바로잡았다. 둘째,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추계할 때 기존연구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1인당 지표로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를 감안한 전일 종사자(FTE) 기준으로 구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본고에서 구한 기능적 소득분배가 개인 간 소득분배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고의 결과에 따르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면 자료로 접근 가능한 전체 기간(1975-2021년)에 걸쳐 두 증가율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다만 한쪽이 다른 쪽을 앞서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났다. 1987년까지는 두 증가율에 차이가 없었지만, 민주화 이후 노사분규가 분출하면서 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앞섰고, 외환위기(1997)의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속에서 임금 증가가노동생산성에 뒤처져 있었다가,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역전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도 이러한 추이에 대응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하였으며, 근래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더해져서 빠르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소득분배의 추이는 최상위 소득집중도의 동향을 비교적 잘 설명하지만, 보다 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소득분배 지표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절에서는 기존연구의 자영업의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국민계정으로 본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를 간단히 살펴본다. 제Ⅲ절에서는 기존연구의 노동생산성 정의를 검토하고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증가율을 비교한다. 제Ⅳ절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계하

고 기존연구와 어디에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보이고, 제 V 절에서는 이러한 기능적 소득분배가 개인 간 소득분배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검토한다. 제VI절에서는 본고 에서 발견한 사실을 요약하고 남겨진 과제를 언급한다.

## Ⅱ. 국민계정 통계와 자영업

소득을 노동과 자본의 몫으로 나누는 기능적 소득분배는 소득을 가장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민계정 통계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기에서 부딪히는 어려 운 문제 중의 하나가 자영업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 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므로 그 방식 여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한 연구들(주상영·전수민, 2014, 2019; 이병희, 2015; 이강국, 2019; 박정수, 2020)은 국민계정 통계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을 가계부문의 영업잉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자영업의 실태를 적지 않 게 왜곡한다. 여기서는 먼저 국민계정 통계에서 자영업의 소득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 는지를 설명하고,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을 구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림 1〉은 국민계정 통계에 의거해서 제도부문별 소득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제 도 부문이란 가계, 법인(이는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으로 구분되지만 여기서는 통합 해서 제시), 정부, 국외(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문으로 나뉜다. 각 부문의 셀 은 피용자보수(X), 영업잉여(Y), 고정자본소모(D), 순 생산물세(T)로 나누었으 며, 이들의 합계가 GDP(=X+Y+D+T)가 된다. 1) 가계 부문에는 비영리단체 (NP)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포함되지만 규모가 작고 자료상 이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주택 자산이 매년 창출하는 주거서비스 (H)도 가계 영업잉여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데,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나 자가 소유자의 귀속임대료의 합계(Y\_H)로 파악된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부 가가치도 가계 부문에 포함되는데, 개념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SE1)와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SE2)로 나눌 수 있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양자를 구분하 여 조사하고 있지만, 국민계정 통계에서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아 후술하는 방법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자영자(SE1)의 경우에는 정의상 피용자보

<sup>1)</sup> 여기서 피용자보수  $X = X_{NP} + X_{SP2} + X_{SE3} + X_C + X_C$ 와 같이 하첨자가 없는 X는 하첨자가 있 는 모든 X의 합계를 나타낸다. Y, D, T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사용한 X와 Y, 자영업자 (SE)의 표기는 박정수(2020)의 표기를 따랐다.

수가 없이 영업잉여 $(Y_{SE1})$ 만 있고, 고용주(SE2)의 경우는 피용자보수 $(X_{SE2})$ 와 영업잉여 $(Y_{SE2})$ 가 있다.  $^{2)}$ 

가계무분	비영리단체( <i>NP</i> )	피용자보스	÷(X)	고정자본소모 $(D_{NP})$	순생산물세 $(T_{NP})$
	, - , - , , ,	2.2.2.2.4.2.2.2	212	고정자본소모 $(D_H)$	$ ext{ 순생산물세}(T_{H})$
	1 1 1 1 (== /	영업잉여(실제 및 구	/ )	12	
	자영자( <i>SE</i> 1)	0.2.1		고정자본소모 $(D_{SE1})$	순생산물세 $(T_{SE1})$
	고 <del>용주</del> ( <i>SE</i> 2)	피용자보수 $(X_{SE2})$	영업잉여 $(Y_{S\!E\!2})$	고정자본소모 $(D_{S\!E\!2})$	순생산물세 $(T_{S\!E\!2})$
법인부문	준법인( <i>SE</i> 3)	피용자보수 $(X_{S\!E\!3})$	영업잉여 ( $Y_{S\!E\!3}$ )	고정자본소모 $(D_{S\!E\!3})$	순생산물세 $(T_{S\!E\!3})$
	법인( <i>C</i> )	피용자보수 $(X_C)$	영업잉여 $(Y_C)$	고정자본소모 $(D_C)$	순생산물세 $(T_C)$
정부부문	정부( $G$ )	피용자보수 $(X_G)$		고정자본소모 $(D_G)$	

〈그림 1〉 제도부문별 부가가치의 구성과 자영업의 범위

- 주: 1) 국외 부문을 생략하였고, 정부부문에 소액의 영업잉여가 있지만 제시하지 않았다.
  - 2) 순 생산물세란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뺀 것을 말한다.
  - 3) 음영을 한 부분이 자영업에 해당한다.
  - 4) 피용자보수 X는  $(X_{NP}+X_{SE2}+X_{SE3}+X_C+X_C)$ 와 같이 하첨자가 있는 모든 X의 합계를 나타낸다(Y,D,T도 마찬가지). 그리고 GDP는 (X+Y+D+T)가 된다.
  - 5) 국민계정의 소득계정에서 가계부문은 법인과 정부 부문에서 지급된 피용자보수 $(=X_{SE3}+X_C+X_C)$ 가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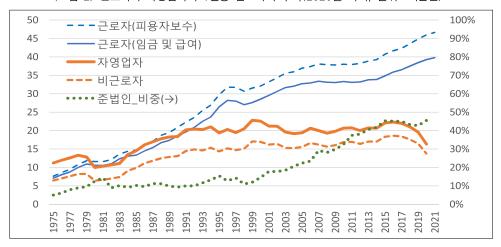
여기서 기존연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법인에 준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법인(SE3)으로 간주하여 비금융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준법인의 피용자보수 $(X_{SE3})$ , 영업잉여 $(Y_{SE3})$ , 고정자본소모 $(D_{SE3})$ , 순 생산물세 $(T_{SE3})$ 는 법인부문에 합산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준법인으로 분류된 자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잉여를 인출하여 가계소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국민계정은 가계부문의 재산소득인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이를  $Y_{SE3}$ 와 구분하여  $\widehat{Y_{SE3}}$ 로 표기)이라는 항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은 자영자(SE1), 고용주 $(SE2)^3$ , 준법인(SE3)의 합계로 보아야 하지만 $(\langle \text{그림 } 1 \rangle)$ 의 색칠한 부분), 기존연구는 자영업의 영업잉여를 가계 부문의 영업잉

<sup>2)</sup> 국민계정에서는 가계의 영업잉여에서 주거서비스를 제외한 것 $(즉\ Y_{SE1}+Y_{SE2})$ 을 혼합소득으로 제시하고 있다.

<sup>3)</sup> 여기서 고용주(*SE*2)는 가계 부분에 속한 고용주를 말한다. 준법인(*SE*3)는 모두 고용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를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자영자와 고용주로 나눌 경우의 고용주는 (*SE*2+*SE*3)가 된다.

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거서비스(H), 자영자(SE1), 고용 주(SE2)의 합계 $(=Y_H+Y_{SE1}+Y_{SE2})$ 가 되어 버렸다. 즉 자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가 포함되고 자영업 중에서 사업체 규모가 큰 준법인이 빠져 버렸으므로 자영업의 실태가 적지 않게 왜곡되었다.

그러면 〈그림 1〉의 자영업의 범위에 맞추어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을 구하고 그것 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그림 1〉에서 먼저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피용 자보수(X)로 파악되므로 통계청에서 조사된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수 중에서 임금 근로자수로 나누어 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용자보수에는 임금 및 급여 이외에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빼서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1인당 임금 및 급여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렇게 구한 근로 자 1인당 피용자보수와 임금 및 급여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액으로 제시하였 다. 그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및 급여는 1975-2021년간에 711만원에서 3, 979만원으로 5, 6배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그사이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 회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피용자보수의 7%에서 15%로 크게 늘었다.



〈그림 2〉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1인당 연소득의 추이(2020년 가격, 단위: 백만원)

- 주: 1) 연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 실질액(단위: 백만원)이다.
  - 2) 비근로자란 자영업자(즉 자영자와 고용주)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것이다.
  - 3) 준법인\_비중(우축 눈금)은 준법인기업소득인출( $\widehat{Y_{SP3}}$ )을 자영업의 영업잉여(=  $Y_{SP1}+Y_{SP2}+$  $\widehat{Y_{SF3}}$ )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ECOS(국민계정);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

이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들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에서 영업잉여 (=  $Y_{SE1}$  +  $Y_{SE2}$  +  $Y_{SE3}$ )가 되고, 이를 자영업자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는 자료 이용상의 제약이 있다. 하나는 2010년 이후에는 가계의 영업잉 여를 주거서비스( $Y_H$ )와 혼합소득(=  $Y_{SE1}$  +  $Y_{SE2}$ )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지만 그이전은 그렇지 않아 거기에서 주거서비스 영업잉여를 분리해 낼 필요가 있다. 4) 또하나는 국민계정에서는 준법인의 영업잉여( $Y_{SE3}$ )를 알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을 그 대리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다만 준법인이 자신의 영업잉여를 매년 모두 인출한다고 보기 어렵다(즉  $Y_{SE3} \geq \widehat{Y_{SE3}}$ )고 생각되며, 만약 인출되지 않고 남은 영업잉여가 있다면 그만큼 자영업의 소득이 과소평가(또는 비금융법인의 영업잉여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는 자영업의 영업이여 중에서 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Y_{SE3}/(Y_{SE1}+Y_{SE2}+Y_{SE3}))$ 을 보였다. 준법인의 비중은 1990년대까지는 10% 정도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후 빠르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45%를 넘어섰다. 5) 기존연구에서 가계의 영업이여 $(Y_H+Y_{SE1}+Y_{SE2})$  비중이 빠르게 하락한 것을 가지고 곧 자영업의 비중 감소로 보았지만, 거기에는 준법인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 자영업자의 1인당 연소득을  $(Y_{SE1}+Y_{SE2}+Y_{SE3})/$ 자영업자수의 산식으로 구해 그 실질액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연소득을 보면 1990년대 초까지는 임금근로자의 연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지만, 그 후 역전되었고 임금근로자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연소득이 가장 높았던 해가 1999년(2,280만원)이며 그후 정체되었다. 최근에 자영업자의 연소득이 더욱 감소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이다. 위 산식의 분모인 자영업자수에 무급 가족종사자수까지 더해서 비근로자의 1인당 연소득을 보면 더욱 열악해진

<sup>4)</sup> 주택이 창출하는 주거서비스 부가가치와 영업잉여에 관한 상세 정보는 산업연관표에서 얻을 수 있지만, 2009년 이전에는 주거서비스가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ECOS) 중에서 부동산 및 임대업의 영업잉여 통계를 이용하였다. 거기서 주거서비스는 부동산 서비스과 임대업과 합산되어 있는데, 이중 주거서비스의 비중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0-12년의 평균 비율(76.6%)을 그 이전 시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거서비스 영업잉여(즉  $Y_H$ )를 구했다.

<sup>5)</sup> 전체 자영업자 영업잉여 중에서 준법인의 비중이 45%로 높아지면, 고용주는 대부분 준법인으로 분류되고 가계부문는 주로 자영자로 채워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 결과 가계부문의 고용주 영업잉여  $(Y_{SP2})$ 는 최근에는 0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다. 다만, 준법인이 그들의 영업잉여 중에서 소득으로 인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실제 연소득은 〈그림 2〉보다는 좀더 위쪽으로 이동 하겠지만, 2000년대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이 정체되었고 임금근로자와의 격차가 크 게 벌어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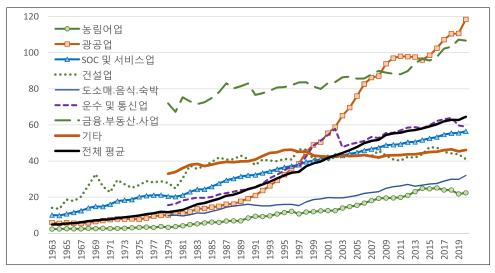
〈그림 2〉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정체되고 근로자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자. 국민계정에는 산업별(경제활동별) 부가가치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수와 결합하면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의 1인당 부가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국민계정에서 산업별 부가가치는 기초가격 (basic price)으로 제공된다. 기초가격이란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할 때 생산자가격 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를 빼고 정부의 보조금을 더한 가격을 말하는데,  $\langle$ 그림 1 $\rangle$ 에서 보면 GDP에서 순 생산물세(T)가 빠진 (X+Y+D)가 된다.  $\langle$ 그림 2〉에서 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피용자보수(X)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Y_{SE1,2,3})$ 로 파악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거기에 법인의 영업잉여 $(Y_C)$ 와 고정 자본소모(D)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3〉은 이렇게 얻은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2015년 불변가격으로 제 시하였다. 그 사이에 산업분류가 많이 바뀌었지만, 농림어업, 광공업, SOC(사회간 접자본) 및 서비스업과 같은 대분류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서비스 업이 세분되었는데, 일관된 분류가 어려운 경우 기타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6)

〈그림 3〉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998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가 역전되었고 그 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1963년에는 농립어업, 광 공업, SOC 및 서비스업의 산업별 부가가치가 전체 평균 대비로 각각 0.44, 1.23, 2. 33배였는데, 2021년에는 0. 35, 1. 84, 0. 88배로 바뀌어 광공업(대부분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상대적 하락이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두 시기(즉 1963-97년과 1997-2021년)의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농 림어업은 -2.1%에서 -1.9%로, 광공업은 5.9%에서 -0.2%로, SOC 및 서비스업은 5.8%에서 1.7%로 각각 하락하였다. 고도성장기 고용증가를 주도해 왔던 제조업이

<sup>6)</sup> 기타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 업과 같은 이질적인 것들을 묶어 놓았다. 산업분류를 일관되게 맞추는데 한계가 있어 2002-03 년의 운수통신업과 같이 단절이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의 대체적인 추이 를 보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고용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한중간의 수교(1992년)와 중국의 WTO 가입 (2001년)으로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가 도태된 반면, 확대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대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가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의 비약적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2015년 불변가격, 단위: 백만원)

주: 기타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SOC는 사회간접자본을 말한다.

자료: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이에 대해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그리고 개인서 비스업이 포함된 기타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의 수준이 낮았고 증가속도도 느렸다. 예컨대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2019-21년간의 취업자 수가 연평균 -4.4%로 감소하였지만, 그 이전인 1980-2019년간에는 연평균 2.1%의 증가율을보였다. 생산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즉서비스업은 제조업의 고용 축소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면서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이러한 역할은 제조업의 경우와는 달리 국제경쟁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에서 본 자영업 소득의 정체와 근로자와의 소득격차 확대는 이러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격차로 나타난 생산성의 차이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 Ⅲ. 노동생산성과 임금

기능적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 나는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과 자본의 몫이 얼마인가를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 생산성과 임금 중에서 어느 쪽의 증가가 더 빨랐는지를 묻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된다. 후자의 경우 무엇을 노동생산성 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이외에 증가율의 괴리를 묻는 만큼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비 교할지 또는 어떤 물가지수를 사용할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먼저 후자 의 질문을 다루고, 다음 절에서 전자를 다루기로 한다.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산과 소 득을 가장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계정 통계로 접근하기로 한다. 임 금의 경우 전술한 피용자보수/근로자수의 산식으로 근로자 1인당 임금을 구하는 데에 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이것과 비교되는 노동생산성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표 1〉은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증가율이 그 정의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보였다.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75-2021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함 께 이를 4 기간으로 나누고7) 각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1〉 의 상단은 취업자수와 근로자수 통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지만, 하단은 전일 종사자 (full time equivalent, FTE)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사이 근로시간이 많이 변했고 파트타임 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경우는 모 두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증가율을 구했지만, 임금의 경우는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모두 사용하여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그림 4〉는 〈표 1〉의 상단에 제시된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1975년을 기준(즉 1975년=1) 으로 제시 하였다.

먼저 GDP/취업자수로 구한 취업자 1인당 GDP(불변가격)와 CPI로 나누어 구한 실질임금을 비교한 연구를 들 수 있다(박종규, 2013; 김유선, 2015, 2019). 〈표 1〉 에서 GDP/취업자와 피용자보수/근로자수(CPI)가 그것인데, 1975-2021년에 연평균 각각 4.35%와 4.05%로 나와 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보다 높았다. 특히

<sup>7) 1975-2021</sup>년간을 1987년, 1997년, 2010년을 경계로 4 기간으로 나누었는데, 민주화나 외환위 기와 같은 충격이 있었고, 그 해를 전후해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증가율이 역전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997-2010년을 보면 각각 3.72%와 1.42%로 증가율이 낮았지만,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온다. 이를 〈그림 4〉에서 보면, 1975년=1로 본 GDP/취업자와 피용자보수/근로자수(CPI)의 값이 2000년에 거의 근접(4.30과 4.27)한 후 빠르게 벌어져 예컨대 2012년에는 6.1과 5.1의 격차를 보였다. 8) 이를 박종규(2013) 등은 "고용 없는 성장"에 더하여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란 뜻으로 "임금 없는 성장"이라고 불렀다.

	1975-87	1987-97	1997-2010	2010-2021	1975-2021	
GDP/취업자수(박종규, 김유신)	6.48%	5.77%	3.72%	1.54%	4.35%	
(피용자보수+영업잉여) /취업자수	5.99%	5.17%	3.51%	1.14%	3.94%	
노동생산성(이강국)	6.06%	4.97%	3.36%	1.05%	3.85%	
노동생산성 (박정수)	5.34%	4.58%	3. 29%	1.09%	3.57%	
노동생산성 (본고)	5.57%	4.61%	3.35%	1.15%	3.66%	
피용자보수/근로자수	5.59%	5.66%	2, 39%	2.03%	3.84%	
피용자보수/근로자수(하위 90%)	5.59%	6.23%	1.73%	2.37%	3.88%	
피용자보수/근로자수(CPI)	7.03%	6.44%	1.42%	1.87%	4.05%	
	전일 종사자(FTE) 기준					
GDP/FTE취업자	6.07%	6.59%	4.75%	2,95%	5.05%	
(피용자보수+영업잉여) /FTE취업자	5.59%	5.99%	4.54%	2.55%	4.64%	
노동생산성(FTE, 본고)	5.17%	5.42%	4.37%	2.55%	4.36%	
피용자보수/FTE근로자수	5.19%	6.48%	3.41%	3.44%	4.54%	
피용자보수/FTE근로자수(CPI)	6.62%	7.26%	2.43%	3.28%	4.76%	

〈표 1〉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박종규(2013); 김유선(2019); 이강국(2019); 박정수(2020); 김낙년(2018).

주: 1) CPI가 붙은 것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머지는 모두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였다.

<sup>2)</sup> 하위 90%란 김낙년(2018)의 임금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소득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최근 연도는 저자가 update한 것이다.

<sup>3)</sup> FTE (full time equivalent) 란 취업자수(또는 근로자수)\*근로시간으로 구한 총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의 전일 종사자로 환산한 취업자수(또는 근로자수)를 말한다.

<sup>8)</sup> 박종규(2013)는 실질임금을 임금구조기본조사(고용노동부)의 5인이상 상용근로자 임금을 CPI로 나누어 사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림 4〉의 피용자보수/근로자수(CPI)의 추이와 크게다르지 않다.

- - GDP/취업자수 ······ (피용자보수+영업잉여)/취업자수 - 노동생산성(본고) ---- 피용자보수/근로자수(GDP deflator) - 피용자보수(하위 90%) - · 피용자보수/근로자수(CPI) \$\psi \text{2}\forall \text{2}\psi \text{2}\te

〈그림 4〉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추이(1975년=1)

자료: 〈표 1〉과 동일.

이러한 인식은 두 가지 점에서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용한 물가지수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표 1〉에서 피용자보수/근로자수(CPI)는 1997-2010년에 연평균 1.42% 증가하였지만,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피용자보 수/근로자수는 2,39%로 높아져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CPI에는 수입되는 소비재나 주거비와 같이 생계비에 영향을 주는 가격이 반영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재 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반영된다.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도 다르다. CPI는 고정된 소비품목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므로 상대가격 의 변할 때 소비품목이 대체되는 효과가 반영되지 않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연쇄 지수 방식으로 구하므로 그렇지 않다. 따라서 두 물가지수 간의 갭이 적지 않게 나타 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할 때에는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나 서비 스의 수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CPI를 이용해서 실질임금을 구한다. 그렇지만 여기 서는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고 있으며 임금은 이론적으로 근로자의 한계생산 의 가치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비교할 때 에는 근로자가 소비하는 품목이 아니라 생산하는 품목으로 구한 물가지수로 실질화하 는 것이 타당하다(Feldstein, 2008). 〈표 1〉에서 참고로 제시한 피용자보수/근로자 수(CPI)를 제외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지표를 모두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것

### 은 그 때문이다. 9)

또 하나의 문제는 GDP/취업자수의 분자(GDP)에는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용자보수와 영업이여 이외에 순 생산물세과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순 생산물세는 정부로 귀속되는 것이며, 고정자본소모는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자본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들이 노동이나 자본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임금과비교할 때에는 이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GDP 중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순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1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해 온 반면, 고정자본소모는 1970-2021년에 6.3%에서 20.9%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따라서GDP/취업자수에서 이들 항목을 뺀 생산성을 구하면 그 증가율이 떨어진다. 〈표 1〉과〈그림 4〉의 (피용자보수+영업이여)/취업자수가 그것이다. 〈그림 4〉에서는 GDP/취업자수가 2021년에 1975년의 7.1배였는데, 순 생산물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뺀 결과 5.9배로 떨어졌다. 〈표 1〉에서는 이들 항목을 빼면 생산성의 증가율이 1975-2021년에는 4.35%에서 3.94%로 떨어졌고, 1997-2010년으로 한정하면 3.72%에서 3.51%로 떨어졌다.

요컨대, 박종규(2013) 나 김유선(2019) 등이 "임금 없는 성장"이라고 불렀던 시기 (1997-2010년) 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증가율은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각각 3.72%와 1.42%로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왔지만, 이상의 두 요인을 반영하면 각각 3.51%와 2.39%로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전과 후인 1987-97년과 2010-2021년을 보면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의 증가율이 더 높아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비교되는 두 지표에서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기준이고 실질임금은 근로자 기준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 두 지표의 비교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자영업 부문이 문제가 된다. 이강국(2019)은 취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그림 1〉에서 사용한 표기를 따랐다. 즉 분모를 근로자수로 바꾼 것에 대응하여 분자를 (피용자보수+영업잉여) 대신에 (피용자보수+법인영업잉여) 또는 (피용자보수+영업잉여-가계영업잉여)로 하여 자영업을 배제한 법인부문의 노동생산성을 구하고자 하였다.

<sup>9)</sup> 박정수(2019)는 박종규(2013)가 노동생산성을 GDP 디플레이터로, 임금을 CPI로 각각 실질화 하면서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물가지수로 통일하거나 명목 금액으로 비교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본문에서 밝힌 이유로 양쪽 모두 GDP 디플레이트 를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박정수(2020)가 지적하였듯이 식 (1)은 그가 의도했던 법인부문의 노동생 산성이 아니며 자영업 부문이 일부 들어가 있다. 즉 분자에 들어가 있는 피용자보수 (X) 에는  $\langle$ 그림 1
angle에서 보았듯이 자영업(SE2)에 고용된 근로자의 몫 $(X_{SE2})$ 이 들어 가 있으며, 분모의 근로자수에도  $X_{SE2}$ 에 대응하는 근로자들이 들어가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식 (1)에는 자영업의 일부인 준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수와 그에 대응 하는 피용자보수 $(X_{SE3})$ 도 들어가 있다.

노동생산성 (이강국) = 
$$(X+$$
법인영업잉여) /근로자수 
$$= (X+Y-Y_{SE1}-Y_{SE2}-Y_H)/근로자수 \tag{1}$$

노동생산성(박정수) = 
$$(X + Y - \widehat{Y_{SE1}^1})/$$
조정근로자수1 (2)

노동생산성 (본고) = 
$$(X + Y - \widehat{Y_{SE1}^2} - Y_H)$$
 /조정근로자수2 (3)

이에 대해 박정수(2020)는 식 (2)로 정의된 노동생산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 다. 노동생산성을 구할 때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 부문에서도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경우(즉 SE2의 고용주)를 모두 포함하여 노동생산성을 정의한 것이다. 식 (2)의 분자는 전체 영업잉여(Y)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영업잉여 $(Y_{SE1})$ 를 빼 는 방법으로 구했다. 그리고 분모는 근로자수가 아니라 식 (2)에 포함된 자영업자(즉 고용주) 와 그 가족종사자를 반영한 조정근로자수로 하였다. 자영업자는 경영자와 근 로자의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식 (2)의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주의 영 업잉여 $(Y_{SE2})$ 는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그 가족종사자의 노동투 입으로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고용주 수의 1.5배(즉 고용주 당 가족종사자를 0.5명으로 가정)를 근로자수에 더하 여 조정근로자수를 구했다. 이를 식 (2)의 분모에 조정근로자수1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런데 4(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문 자영업의 영업잉여를 자영자 $(Y_{SE1})$ 와 고용주 $(Y_{SE2})$ 의 몫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국민계정에서는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박정수(2020)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영업 종사자 가구주의 사업소득을 이용하여 자영자 대비 고용주의 1인당 사업소득 비율이 2011-2017년에 걸쳐 평균 2.32배로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다른 연도에도 적용하는 방법으로 양자를 분리하였다. 그는 이 비율의 가정을 여러가지로 바꾸어 보는 강건성 검증을 통해 그것이 노동생산성의 추계 결과를 크게 바꾸지 않음을 보였다. 본고에서도 자영

자와 고용주의 영업잉여를 나눌 때 그의 방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다만 박정수(2020)는 자영업의 영업잉여를 자영자와 고용주로 나눌 때 $\langle$ 그림  $1\rangle$ 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준법인이 자영업 부문에 포함된다는 점과 가계부문의 영업잉여에 자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Y_H)$ 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박정수는 자영업의 전체 영업잉여 $(Y_{SE1}+Y_{SE2}+Y_{SE3})$ 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계부문의 영업잉여 $(Y_{SE1}+Y_{SE2}+Y_H)$ 를 대상으로 자영자와고용주의 몫으로 나누었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계산 결과가 왜곡되었고 식 (2)의 분자에는 주거서비스 $(Y_H)$ 가 일부 포함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2)

본고의 노동생산성은 식 (3) 으로 정의하였다. 즉 박정수(2020) 의 방식을 따랐지만, 식 (2) 와의 차이는 분자에서 노동생산성과는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영업잉여 $(Y_H)$ 를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양자 모두 분자에서 자영자의 영업잉여인  $Y_{SE1}$ 를 빼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추정된  $\widehat{Y_{SE1}}$  와  $\widehat{Y_{SE1}}$  가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라졌다. 분모에서도 조정근로자수를 이용하였는데, 그 취지는 식 (2) 에서 언급한 바와 같지만, 그 방식을 다소 다르게 적용하였다. 식 (2) 에서는 산식에 포함된 고용주의 가족종사자를 모든 시기에 걸쳐 (2) 5명으로 가정하였지만, 연도에 따라 가족종사자수가 크게 변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인당 가족종사자수는 (2) 1975-2021년에 (2) 0.73명에서 (2) 18명으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식 (3) 의 조정근로자수2는 가족종사자수를 (2) 5명으로 가정하지 않고 각 연도의 실제 수치를 이용한 것이다.

《표 1》에는 위에서 정의된 노동생산성으로 구한 증가율을 제시하였다. 1975-2021 년의 증가율은 각 정의의 순서대로 3.85%, 3.57%, 3.66%로<sup>11)</sup> 나와 앞의 취업자

<sup>10)</sup> 자영자와 고용주의 숫자를  $N_{SE2}$  와  $N_{SE2}$ 라고 하고 고용주의 평균 영업잉여가 자영자보다 2.32배 컸다는 점을 이용하면, 자영업 영업잉여 중에서 자영자 몫의 비율  $k=N_{SE1}/(N_{SE1}+2.32*N_{SE2})$ 로 구할 수 있다. 박정수(2020)는 이렇게 구한 k를 가계부문의 영업잉여에 곱해서 자영자의 영업잉여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식 (2)의 분자에서 빼 준 자영자의 영업잉여는  $Y_{SE1}^1=k^*(Y_{SE1}+Y_{SE2}+Y_H)$ 로 구해졌다. 이에 대해 본고의 식 (3)의 분자에서 빼 준 자영자의 영업잉여는  $(Y_{SE3}^2)$ 이 들어간 점이 다르다. 그로 인해 식 (2)와 (3)의 추정된 자영자의 영업잉여의 크기가 달라졌고, 식 (2)의 분자에는 자영자와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Y_H)$ 의 일부가 포함되게 된 것이다.

<sup>11)</sup> 이들 중에서 이강국(2019)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그것은 노동생산성과 무관한 준법인의 분류상 변화로 인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다. 즉 그의 식 (1)의 분자(=*X*+법인

를 기준으로 한 두 생산성 지표(GDP/취업자와 (피용자보수+영업잉여)/취업자)와 비교해서 증가율이 더 낮아졌다.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을 모두 근로자 기준 으로 해야 비교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다시 〈그림 4〉로 돌아와서 GDP/취업자와 피용자보수/근로자수(CPI)가 2000년 이후 갭이 크게 벌어진 것을 근거로 "임금 없는 성장"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양자를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노동생산성 (본고)과 피용자보수/근로자수를 비교하면 생산성과 실질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 지 않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비교의 기준년도를 바꾸면 양상이 달라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림 5〉는 노동생산성(본고)과 실질임금의 증가율을 3년 이동평균으로 제시하였다. 거 기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실질임금을 구할 때 CPI와 GDP 디플레이터의 어느 물가 지수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증가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외환위 기 이전에는 대체로 CPI로 구한 실질임금 증가율이 더 높았고, 외환위기 이후 2013 년까지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CPI로 구한 실질임금이 GDP 디플레 이터로 구한 실질임금에 비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증가율의 진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그것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는 속도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 에 크게 둔화되었음을 뜻한다. 그렇지만 노동생산성과 비교되는 실질임금은 전술했 듯이 GDP 디플레이터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증가폭이 둔화 되었지만 CPI로 본 실질임금보다는 정도가 덜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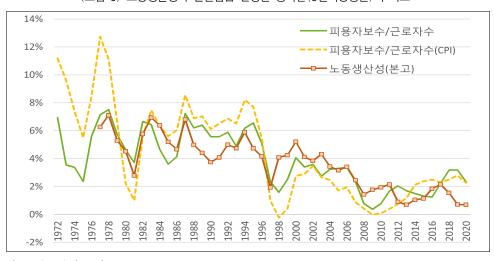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실질임금보다 증가율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 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1987년 이전은 이러한 교대 주기가 짧았지 만, 민주화(1987년) 이후 외환위기(1997년)까지는 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보다 더 빨랐고, 외환위기 이후 2011년까지는 임금 증가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했지 만12), 그후 현재까지는 다시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시기(1975-2021년)를 보면 노동생산성(3.66%)보다 실질임금(3.84%) 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왔다 (〈표 1〉 참조).

역전이 일어난 시기는 그럴 만한 충격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민주화는 권위주

영업잉여)에 들어가 있는 법인영업잉여에는 준법인이 포함되어 있고, 전술했듯이 그들이 빠르 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 (2)와 (3)의 분자는 전체 영업잉여(Y)에서 자영자의 영 업잉여만을 빼 주었으므로 그러한 분류상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up>12)</sup> 이 시기가 길어진 것은 외환위기의 충격을 받은 이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가 이어진 탓으로 보인다.

의 체제하에서 노동운동이 억압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우위에 섰던 종래의 노사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임금을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끌어올린 배경이 되었다. 외환위기는 종래에 겪어 보지 못한 규모로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급증을 낳았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반대 방향으로의 충격을 주었다. 노동생산성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였지만,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010년대 초에는 앞의 두 사례와 같은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임금 증가율이 2010년대에 들어와 상승 추세로 돌아섰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를 이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림 5〉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연평균 증가율(3년이동평균)의 비교

자료: 〈표 1〉과 동일.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실질임금은 피용자보수/근로자수로 구한 평균 임금이며, 중 하층의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기업부문의 시간당 실질 산출액이 1970-2013년에 2.3배 증가한 것과 달리 생산 또는 비감독 근로자(production and non-supervisory workers)의 시간당 실질임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빠른 증가와 대비된다 (Lawrence, 2016). 한국에서는 어떠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여기서는 근로소득의 상위 10%의 소득비중의 추이(김낙년, 2018)를 이용하여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 하위 90%의 근로소득 증가율을 구했다. 그 결과를 〈표 1〉에 피용자보수/근로자수(하위

90%) 로 제시하였다. 그것과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즉 피용자보수/근로자수)의 증 가율을 비교해 보면 1975-87년에는 증가율(5.59%)에 차이가 없었고, 1987-97년은 각각 6.23%와 5.66%로 나와 하위 90% 근로자의 임금증가가 더 빨랐지만, 1997-2010년에는 1,73%와 2,39%로 하위 90%의 증가율이 더 느렸고, 2010년 이후 에는 2.37%와 2.03%로 다시 역전되었다. 전체 시기는 3.88%와 3.84%로 거의 차 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3) 이것은 대체로 후술하는 지니계수의 추이와 부합하며, 미국에서 본 바와 같은 임금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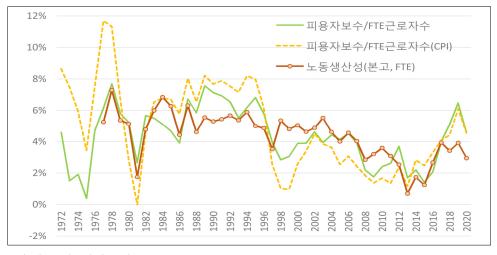
이상에서 노동생산성을 구할 때에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노동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변화를 보다 엄밀히 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당 지표를 구할 필 요가 있다. 전일 종사자 이외에 파트타임 종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 라 근로시간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 면 고도성장기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가 1980년대의 55시간을 정점으로 하여 줄어 드는 역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근래에 는 주당 39시간으로 떨어졌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여기서는 취업자수나 근로자수를 전일 종사자(Full Time Equivalent=FTE) 기준으로 바꾸었다. 즉 취업자수(또는 근 로자수)에 근로시간을 곱해 구한 총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의 전일 종사자의 근로시간 으로 나누어 구했다. 14) 그런 다음 〈표 1〉의 상단의 분모에 들어가 있는 취업자수(또 는 근로자수)를 전일 종사자(FTE) 기준의 취업자수(근로자수)로 바꾸었다.

그 결과를 〈표 1〉의 하단에 제시하였다. 먼저 노동생산성(본고)과 노동생산성 (FTE, 본고)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1975-2021년에 3.66%에서 4.36%로 높아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근로시간이 빠르게 감소했으므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으로 바꾸면 증 가율이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1975-87년의 경우는 증가율이 거꾸로 5.57%에 서 5.17%로 떨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실질임금의 증가율도 예컨대 피용자보수/근로자수와 피용자보수/FTE근로자수 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로 1975-87년은 FTE 기준이 더 낮았지만 그후에는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sup>13)</sup> 이강국(2019)도 홍민기(2015)를 이용하여 추정한 근로자 하위 90%의 평균임금 추이를 그래프 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고와 달리 2010년대에도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그가 의 거한 홍민기(2015)의 추정결과가 본고와 달랐기 때문인데, 그 추계의 문제에 관해서는 김낙년 (2018) 을 참조하기 바란다.

<sup>14)</sup>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 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여기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체 취업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6〉은 앞의〈그림 5〉와 같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3년 이동평균)을 비교하되 FTE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 모두 노동생산성의 하락하였지만, FTE 기준에서는 그 하락 폭이 작았다. 예컨대〈그림 5〉에서 2008년 이후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2%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지만, FTE 기준으로 본〈그림 6〉에서는 2013-15년을 제외하면 2.5%에서 4% 사이로 높아져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왔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그보다 더 가팔라져 최근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 외에〈그림 5〉에서 지적한 점들이 FTE 기준으로 바꾼〈그림 6〉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이 모두 FTE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각 수준은 달라지지만, 양자의 갭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림 6〉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FTE 기준, 3개년 이동평균)

주와 자료: 〈표 1〉과 동일.

# IV. 노동소득분배율

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전체소득을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포함한 국민소득  $(NI, \ \Sigma$ 는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 (4)의 NI는 (X+Y)에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X^F)$ 와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Y^F)$ 의 합계가 된다.

다만 자영업의 소득이나 주거서비스 영업잉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과 주거서비스 영업잉여를 모두 자본소득으로 보아 아래 식 (5)와 같이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의 소득 비중이 계속 하락해 왔기 때문에 이 지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 노동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 지표는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OECD 등 국제비교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의는 식 (6)과 같이 자영업자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림 2〉에서 보았듯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는 이 방식으로 구한 노동소득 몫이 과대평가되어 실태와 동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강국 $(2019)^{15}$ 은 전체소득에서 자영업 부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구했다. 식(7)이 그것인데, 앞의 식(1)의 노동생산성의 정의와 대응한다. 다만 전체소득이 NI 기준으로 바뀌면서 식(1)의  $(X+Y-Y_{SE1}-Y_{SE2}-Y_H)$ 가  $(NI-Y_{SE1}-Y_{SE2}-Y_H)$ 로 달라졌고, 노동에 대한 보수가 X에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를 더해  $(X+X^F)$ 로 바뀌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1)에 대해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는 식(7)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16)가

<sup>15)</sup> 여기서는 이강국(2019)을 대표로 예시하였지만, 주상영·전수민(2014, 2019)과 이병희(2015)도 그와 동일한 산식을 이용하였다.

<sup>16)</sup> 주상영·전수민(2014; 2019)은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OSPUE노동소득분)/NI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OSPUE는 '비법인 개인기업의 영업잉여'를 말하고, 'OSPUE노동소득분'=(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자본소득) \*OSPUE로 정의되었다. 이 식에 포함된 자본소득은 (NI-피용자보수-OSPUE)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NI-OSPUE)가 되어 식(7)이 된다. 단 이 식에 들어가 있는 피용자보수란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가 포함된 ( $X+X^F$ )를 말한다. 그런데 그들은 OSPUE를 가계부문의 영업잉여( $Y_{SE2}+Y_{SI2}+Y_{H}$ )로 보았으므로 OSPUE에서 준법인( $Y_{SE3}$ )이 빠졌고, 자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Y_H$ )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위의 식에서 OSPUE 중의 노동소득분의 비율을 OSPUE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에서의 동비율, 즉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자본소득)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된다. 즉 이 비율의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 있는 피용자보수에는 박정수(2020)가 지적했듯이 OSPUE의 일부인 자영업의 피용자보수( $X_{SI2}$ )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준

계부문의 고용주가 점차 준법인으로 분류되면서 식 (1)의 분자가 커져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실제보다 높아졌음을 지적했는데, 동일한 문제가 식 (7)의 분모를 점차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소득분배율을 실제보다 하락하게 만드는 편향을 가진다. 그리고 식 (7)에는 분모가 NI에서 가계의 영업잉여를 빼는 방식으로 구해졌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소득에서 주거서비스의 영업잉여 $(Y_H)$ 가 빠졌다.

$$NI = X + Y + X^F + Y^F \tag{4}$$

노동소득분배율(한국은행) = 
$$(X + X^F)/NI$$
 (5)

노동소득분배율 (OECD) = 
$$[(X+X^F)+$$
비임금근로자수\* $(X+X^F)/$ 임금근로자수)] $/NI$  (6)

노동소득분배율(이강국 $)=(X+X^F)/(NI-$ 가계영업잉여)

$$= (X + X^{F})/(NI - Y_{SE1} - Y_{SE2} - Y_{H})$$
 (7)

노동소득분배율 (박정수) = 
$$(X+ 고용주노동소득분1)/(X+Y-\widehat{Y_{SE1}^1})$$
 (8)

노동소득분배율 (본고) = 
$$(X + X^F + 고용주노동소득분2) / (NI - \widehat{Y_{SE1}^2} - Y_H)$$
 (9)

이에 대해 박정수(2020)에서 제안된 노동소득분배율은 식 (8)로 제시하였다. 17) 앞의 다른 정의는 NI를 전체소득으로 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했지만, 박정수의 경우 이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전체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 (8)의 전체소득인  $(X+Y-Y_{SE1}^1)$ 는 노동생산성을 구한 식 (2)의 분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식 (2)에 대해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식 (8)의 분모인 전체소득에 고용주의 영업잉여 $(Y_{SE2}$ 와  $Y_{SE3})$ 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분자에서도 그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추정해서 포함 하였다. 이를 식 (8)에서 '고용주노동소득분1'이라 했는데, 그는 이를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고용주의 영업잉 여를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결과가 된다. 앞에서 OECD의 정의인 식 (6)에서 이러한 가정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문

법인의 피용자보수 $(X_{SE3})$ 도 포함되어 있고 분모에는 다시 준법인의 영업잉여 $(Y_{SE3})$ 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sup>17)</sup> 박정수(2020)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여러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조정분배율 (D2)를 그의 정의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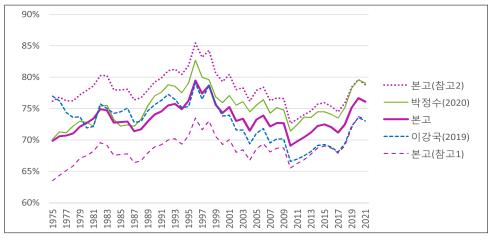
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고용주로 한정해도 마찬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다. 18) 따라서 '고용주노동소득분1'을 근로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노동 소득분배율이 실제보다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본고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식 (9) 로 제시하였다. 박정수의 식 (8) 과의 차이는 분모 가 NI 기준으로 바뀌면서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이 포함되었고, 분자에도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XF)가 포함되었으며, 분모에서 제외한 자영자의 영업잉여 $(Y_{SE1})$ 를 추 정한 값이  $\widehat{Y_{SE_1}^1}$ 와  $\widehat{Y_{SE_1}^2}$ 로 달랐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식 (8)에는 전술한 이유로 주거서비스의 영업잉여 $(Y_H)$  중 일부가 포함되었지만, 4(9)에는 이를 제외하였다. 노동생산성을 구할 때에는  $Y_H$ 는 노동의 산출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는데, 노동소득분 배율을 구할 때에도 같은 이유로 전체소득에서  $Y_{H}$ 를 제외하고자 한다. 이것은 전술 했듯이 주택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Cette et al., 2019; Gutiérrez and Piton, 2020). 그리고 분자에 들어간 고용주의 노동소득분을 추계할 때에도 고용주의 가족종사자 수를 0.5 명으로 고정하지 않고 연도별 실제 수치를 반영하였다. 본고의 산식의 식 (9)의 분자 에는 '고용주노동소득분2'을 포함하였는데, 고용주(가족종사자 포함)의 1인당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의 1/2를 노동소득분으 로 가정하였다. 19)

<sup>18) 〈</sup>그림 2〉에서 보았듯이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이 1990년대 이후 정체되면서 근로자의 1인당 소 득과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졌다. 이 국민계정과 취업자 통계를 이용하여 고용주의 영업잉여가 자영자의 2.32배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고용주의 평균소득을 구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고 용주(가족종사자를 포함)의 1인당 소득은 1992년까지는 근로자보다 높았지만 그후 역전되었고, 2010년대에는 그 73%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별 로 고용주와 자영자 가구의 사업소득과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고용주>근로 자>자영자의 순으로 나와 고용주의 소득이 근로자보다 높았다.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에는 고 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준법인인 고용주의 경우 영업잉여 중 소득으로 인출되 지 않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본 것이므 로 가구원의 소득을 포함한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그 외에도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국민계정과 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놓고 어느 쪽이 실태에 가까운지를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능적 소득분배는 국민계정 데이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고용주의 근로소득분을 근로자의 1인당 피용자보수 로 가정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하게 추정할 수 있다.

<sup>19)</sup>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과 자본의 몫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합의된 결론을 찾기는 어렵고 나라에 따라 상황이 다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Johnson (1954) 이후 자영업자의 노동과 자본의 몫을 2/3와 1/3로 나누는 방식이 널리 이용되었다 (Krueger, 1999), 조태형(2016)은 노동분배율의 다양한 추정 산식을 검토한 후 노동과 자본의

〈그림 7〉은 식 (7)~(9) 로 추정한 이강국(2019), 박정수(2020), 본고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제시하였다. 본고와 이강국(2019)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기 위해 본고의 산식 (9)에서 '고용주노동소득분2'을 빼서 구한 본고(참고1)도 그래프에 제시하였다. 본고(참고1)과 이강국(2019)을 비교해 보면 앞 시기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졌지만, 최근으로 오면 양자가 접근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산식의 분자가  $(X+X^F)$ 로 동일하므로 결국 분모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즉 이강국의 식 (7)은 식 (9)와 달리 분모에서 고용주의 영업이여 $(Y_{SE2})$ 를 추가로 뺐기(그로인해 분모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게 나왔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중 고용주가 점차 준법인으로 분류되면서 가계부문에 남은 고용주의 영업이여 $(Y_{SE2})$ 가 빠르게 줄어들어 최근에는 미미해졌기 때문에 양자가 접근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본고(참고1)와 이강국(2019)의 차이는 이러한 분류상의 변화를 반영한것이며, 이강국(2019)에서 나타난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그만큼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추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의 비교

주: 박정수(2020), 이강국(2019)는 그 방법에 따라 최근까지 update한 것이다.

한편 본고와 박정수(2020)를 비교하기 위해 본고의 식 (9)에서 '고용주노동소득분 2'를 박정수와 동일하게 '고용주노동소득분1'(즉 근로자의 1인당 피용자보수 적용)로

몫을 1/2로 나눌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고용주의 근로소득의 몫을 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의 1/2로 가정하였다.

바꾸어 구한 것을 본고(참고2) 로 제시하였다. 본고(참고2) 와 박정수(2020)의 차이는 식(8)과 (9)의 분모에서의 차이(7로 앞의 노동생산성을 추계할 때 언급한  $Y_{SE1}^1$ 와  $Y_{SE1}^2$ 의 차이와  $Y_H$ 의 포함 여부)와 고용주의 가족종사자의 반영 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본고(참고2)와 본고의 차이는 '고용주노동소득분'을 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와 동일하게 할지 또는 그 1/2로 할 것인가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본고(참고1)은 '고용주노동소득분'을 0으로 간주한 것이므로 본고가 본고(참고1)과 본고(참고2)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고용주의 노동소득분에 관한 가정을 바꿀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를 짐작해 볼수 있다.

이제 이강국(2019), 박정수(2020), 본고의 세 노동소득분배율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975-87년은 1982-3년을 경계로 짧게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지만, 그 후에는 10 여년의 긴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1987-97년에는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2010년까지 빠르게 하락하였고, 그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것은 앞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에서 보았던 것과 부합한다. 즉 노동생산성보다 실질임금의 증가가 빨랐던 시기는 노동소 득분배율이 상승하였고, 반대의 경우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하락하다가 2010년 이후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최근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영업잉여가 임금과 달리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그 상승 추세는 그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전체 시기를 대상으로 추세선을 구해 보면 이강국(2019)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박정수(2020)는 반대로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본고의 추세선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본고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시기의 평균이 73%로 나왔으며 이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고할 수 있다.

# V. 기능적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

앞에서 노동과 자본의 몫으로 나누는 기능적 소득분배를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개인 간 소득분배와 차이가 있다. 먼저 개인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모두 가진 경우

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의 몫인 법인의 영업이여 중에서는 배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사내유보로 남는 경우가 많다. 법인의 소득은 궁극적으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계로 귀속되겠지만, 사내유보는 가계에서 실현된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소득의 몫이 커져서 사내유보가 많아지면 가계에서 실현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 국민계정으로 접근한 노동소득분배율에서는 법인의 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보지만, 개인 간 소득분배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가계조사에서는 사내유보가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가계와 법인의 소득을 나누고 그 구성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8〉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구할 때 전체소득으로 사용했던 NI의 제도부문별 구성과 가계소득으로 한정한 경우의 소득종류별 구성을 보인 것이다. 식 (4)에서 정의한  $NI(=X+Y+X^F+Y^F)$ 는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제외하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가 되지만, 이를 제도부문별로 나누면 거기에 순재산소득(이자, 배당,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이 들어오게 된다. 각 부문의 순재산소득을 합하면 서로 상쇄되어 0이 되지만 부문별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패널 A는 NI의 제도부문별 구성비를 보인 것인데, 거기에는 순재산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1988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고, 1998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10년까지 빠르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NI 중 정부의 구성비가 미미하기 때문에200 가계소득 구성비의 상승과하락은 곧 법인소득 구성비와 반대로 나타났다.

패널 A에는 순재산소득이 포함된 구성비인데, 거기에서 순재산소득과 그 나머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분리하여 NI 대비 비율로 제시한 것이 패널 B와 패널 C이다. 먼저 패널 B를 보면 자금의 수요자인 법인은 이자와 배당 수입보다 그 지급이

<sup>20)</sup> 국민총소득(GNI)은 GDP(=피용자보수+영업이여+고정자본소모+순생산 및 수입세)에 국외순수 취요소소득을 더해서 구한다. GNI에서 다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하면 국민순소득(NNI=GNI-고정자본소모)가 되며 이를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이라고도 한다. NNI에서 다시 정부로 가는 순 생산 및 수입세를 빼면 MI가 되며 이를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이라고도 한다. 이를 제도부문별로 나눌 경우 순재산소득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부문의 MI는 (영업이여+순재산소득)이 되며 그 비중은 미미해진다. 그런데 주상영·전수민(2019)은 가계소득분배율을 본고(가계소득/MI)와 달리 가계총본원소득/GNI로 정의하였는데, 자본이나 노동의 어느 쪽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 분자인 가계총본원소득(이것은 가계부문의 GNI에 해당)을 (피용자보수+영업이여+순생산 및 수입세+순재산소득+고정 자본소모)로 구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정부부문에 속하는 것이므로 가계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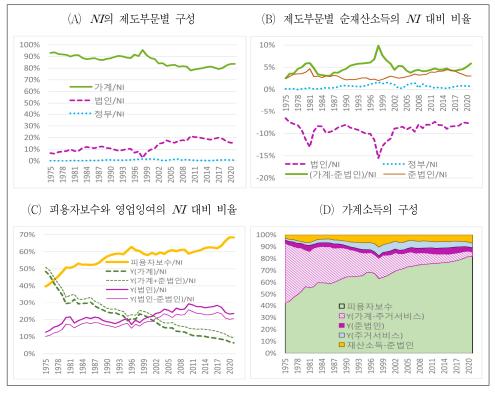
훨씬 많아 순재산소득이 마이너스(-)이고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의 순재산소득은 플 러스(+)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금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준법인의 영업잉여 중에서 소득으로 인출된 것이 가계의 재산소득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프에서는 이를 가계의 재산소득에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980년대 초와 외 환위기 때 가계의 순재산소득이 급등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법인의 재산소득이 급감하 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금리가 크게 올라 자금 수요자인 법인의 부담이 급증한 반 면에 가계의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계의 순재산소득 비율이 1998년을 정점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패널 A의 가계소득 비중 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유사한 추이가 나타났다. 가계의 순재산소득이 가계소득 비중 의 추이를 규정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패널 C는 NI에서 피용자보수와 가계 및 법인의 영업잉여의 구성비를 보인 것이 다. 거기에서 법인 영업잉여에는 자영업자인 준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 한 것과 이를 가계의 영업잉여에 포함한 것을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지적했듯이 준법인을 이렇게 조정해서 보는 것이 자영업과 법인의 실태에 더 부합한다. 그에 따 르면 가계(준법인 포함)의 영업잉여 비중이 빠르게 하락한 대신에 피용자보수와 법인 (준법인 제외)의 영업잉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그 양상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sup>21)</sup> 패널 A에서 법인소득 비중의 추이를 보였는데, 그것과 패널 C의 법인 영 업잉여 비율을 비교할 수 있다. 전자에는 순재산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에는 제외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시기에 따라 양상이 달랐는데,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2010년 사이에 법인소득의 비중이 상승(즉 가계소득 비중이 하 락)하였는데(패널 A), 거기에는 패널 B에서 본 법인의 마이너스(-)의 순재산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과 함께 패널 C에서 본 법인 영업잉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함께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패널 D는 가계소득으로 한정하여 소득종류별 구성비를 보인 것이다. 이때 〈그림

<sup>21) 1980</sup>년 이전에는 피용자보수와 법인 영업잉여의 비중이 모두 상승하였지만, 그 후 외환위기 때 까지는 피용자보수 비중이 상승하는 속에서 법인 영업잉여 비중이 정체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2010년까지는 반대로 되었다가 그 후 다시 역전되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노동소득분배율도 이 러한 양상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외에도 많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농촌이나 도시 자영업자 가 도태되어 임금노동자가 될 경우 피용자보수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자영업자가 법인으로 성 장한 경우는 좀더 복잡한데, 법인의 영업잉여를 늘리기도 하지만 임원의 보수 형태로 피용자보 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자영업자와 관련 없이 법인이 설립되거나 임금노동자가 늘어난 것도 여 기에 영향을 미쳤다.

1〉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가계의 영업잉여에서 주거서비스를 분리하고, 재산소득에서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패널 D에서 위의 두 항목(즉 준법인을 제외한 재산소득과 주거서비스)이 자본소득, 아래의 피용자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있는 준법인과 가계의 영업잉여가 혼합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인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한편 혼합소득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혼합소득 중에서는 준법인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langle$ 그림 8 $\rangle$  전체소득(NI)의 제도부문별 구성과 가계소득

주: NI는 국민소득, Y는 영업잉여를 가리킨다.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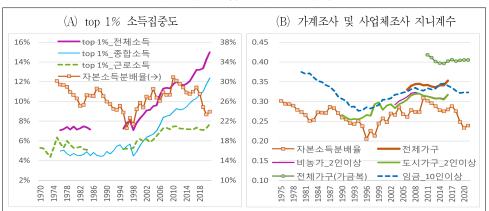
이제 앞 절에서 살펴본 기능적 소득분배가 개인간 소득분배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더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소득분배율(=1-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하락)은 개인 간 소득분배를 악화(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이 노동소득과 자본 소득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단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Bengtsson and Waldenström (2018) 은 21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계정에서 구 한 자본소득분배율과 과세자료로 구한 개인의 소득집중도에 관한 장기 데이터를 이용 하여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에 대해 Francese and Mulas-Granados (2015) 는 1970-2013년간에 93개국에 걸친 거시 및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득불평등의 악화의 주된 요인인 지를 검증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대부분 임금소득 내부의 불평등 증가에 기인하며 노동과 자본의 몫의 변화가 불평등 확대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결 론을 얻었다. 평가가 상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Bengtsson and Waldenström (2018) 에서 이용된 식 (10)의 추정식을 한 국에 적용해서 자본소득분배율의 추이가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피설명변수인 소득불평등 지표에는 과세자료에서 얻은 top 1% 와 같은 소득집중도나 가계조사 등에서 구한 지니계수를 이용하고, 설명변수인 자본 소득분배율(즉 1-노동소득분배율)은 본고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하첨자 t는 연도를, e는 오차항을 말한다. 두 변수가 로그 선형(log linear)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 경우 추정된 계수 값 b는 자본소득분배율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탄력성을 뜻하게 된다. 즉 자본소득분배율이 1% 증가할 때 불평등 지표가 몇 % 증가하는지를 보여준 다.

$$\ln\left(\text{소득불평등 지표}_t\right) = a + b \cdot \ln\left(\text{자본소득분배율}_t\right) + e_t \tag{10}$$

먼저 여기서 이용한 소득분배 지표를 자본소득집중도와 함께 〈그림 9〉에 제시하였 다. 패널 A는 과세자료에서 구한 상위 1%의 소득집중도의 추이를 보였다. 거기에서 근로소득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와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서 구한 것이다.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외에 2,000 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모두 파악되어 있다. 전체소득은 양자를 결합하되 중복을 제 외한 것이다.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 제시된 자본소득분배율은 〈그림 7〉의 노동소득분 배율과 반대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패널 B에는 가계조사로 구한 지니계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관된 계열이 의외로 짧다.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것으로는 도시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구한 지니 계수가 1990년까지 소급되어 계열이 가장 길다. 대상 가구를 비농가 2인 이상으로 확 대한 것이 2003년, 전체 가구로 확대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조사대상 가구를 확대 한 결과 지니계수가 높아졌는데, 그것은 그동안 조사에서 제외된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뜻한다. 그런데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지니계수의 공표를 2016년까지로 중단하고 그후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프에는 그에 의거한 지니계수도 제시하였는데, 이전보다 지니계수가 크게 높아졌다. 이것은 가계동향조사가 소득불평등을 과소 파악하였음을 뜻한다. 그래프에는 또한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임금소득으로 구한 지니계수도 제시하였다. 이것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한 것인데, 그 이하의 영세 사업체를 포함하는 고용형태별 임금실태조사는 후술하듯이 계열이 짧아진다.



〈그림 9〉 자본소득집중도와 소득분배 지표

- 주: 1) top 1%\_근로소득이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소득 상위 1%의 소득비중을, top 1%\_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 신고자 중에서 소득이 높은 순으로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비 중을, top 1%\_전체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전체소득(중복을 제외)에서 성인 인구 상위 1%의 소득비중을 각각 말한다. 구체적인 것은 김낙년(2018)을 참조하기 바란다. 최근 연도는 저자가 update한 것이다.
  - 2) 가계조사의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으로 구한 것이고, 사업체 조사의 지니계수는 개인의 임금으로 구한 것이다.

자료: 소득집중도는 김낙년(2018) 또는 World Inequality Database. 지니계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 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임금의 지니계수는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가 산출하였다.

〈표 2〉는 〈그림 9〉에 제시된 데이터와 식 (10)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소득집중도를 피설명변수로 하는 추정결과를 보면, 전체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를 상위 0.1%, 상위 0.1-1%, 상위 1-10%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중 전체소득 상위 0.1%의 경우 식 (10)에서 추정된 계수 값 b는 1.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즉 자본소득분배율이 1% 높아지면 상위 (). 1%의 소득 집중도가 1.17% 높아짐을 뜻한다. 그 아래 그룹인 top 0.1-1%와 top 1-10%로 가 면 계수 값이 0.30과 -0.12로 낮아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top 0.1%와 top 0.1-1%를 추정할 수 있는데, 추정된 계수 값이 각각 1.05과 0.51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로소득 집 중도를 피설명변수로 한 경우에는 상위 0.1%, 상위 0.1-1%, 상위 1-10%의 추정된 계수 값은 각각 0.98, 0.44, 0.06로 나와 최상위 그룹으로 갈수록 계수 값이 커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설명변수: 자본소득분배율(본고) 계수값 연도 표준오차 샘플수 소득집중도 top 0.1% (전체소득) 1.17\* 0.658 1976-85, 1995-2021 37 top 0.1-1% (전체소득) 0.30 0.336 37 1976-85, 1995-2021 top 1-10% (전체소득) 1976-85, 1995-2021 0.12 0.305 37 top 0.1% (종합소득) 1.05 0.669 46 1976-2021 top 0.1-1% (종합소득) 0.51 0.498 46 1976-2021 top 0.1% (근로소득) 0.98\* 0.516 38 1975-85, 1995-2021 top 0.1-1% (근로소득) 0.44\*\*\* 1975-85, 1995-2021 0.151 38 top 1-10% (근로소득) 1975-85, 1995-2021 0.06 0.188 38 시장소득 지니계수(가계조사) 도시가구\_ 2인 이상 0.53\*\*\* 0.122 27 1990-2016 비농가 2인 이상 0.09 0.157 14 2003-2016 전체가구(가계동향조사) 2006-2016 0.05 0.111 11 전체가구(가금복) 2011-2021 0.04 0.056 11 임금 지니계수(사업체조사) 10인이상\_임금구조조사 0.53\*\*\* 0.117 42 1980-2021 5인이상\_임금구조조사 0.33\*\*\* 0.102 23 1999-2021 5인이상 고용형태조사 0.13 0.077 14 2008-2021

〈표 2〉 자본소득분배율과 개인간 소득분배 지표와의 관계

주: \*\*\*, \*는 각각 1%,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말한다.

자료: 〈그림 9〉의 자료와 동일.

1인이상\_고용형태조사

이것은 개인간 소득분포에 대한 자본소득분배율의 설명력은 최상위 소득으로 갈수 록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Bengtsson and Waldenström(2018)이 다른

0.062

14

2008-2021

0.12\*

나라에 대해 검출한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자본소득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종합소득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로소득의 집중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계조사에 의거한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피설명변수로 한 경우에는 도시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값(0.53)을 얻었고, 그보다 하층까지 포괄하는 나머지 지니계수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다만 〈표 2〉에 보았듯이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의 도시 가구를 제외하면 샘플 연도 수가 11-14개에 불과하였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에서 얻은 임금 지니계수를 피설명변수로 할 때에는 상용근로자 10인 또는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할경우에는 계수 값이 0.53와 0.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었다. 이에 대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같이 임시일용 근로자를 포함해서 5인 또는 1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하위의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 값을 얻지 못하거나 얻더라도 계수 값이 0.12로 더욱 낮아졌다.

## VI. 맺음말

본고에서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고 남겨진 과제를 언급해 두고자 한다.

종래 취업자 1인당 GDP와 CPI로 실질화한 근로자 1인당 임금을 비교하여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뜻에서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러한 괴리는 사라진다. 자료가 있는 전체 기간 (1975-2021년)에 걸쳐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증가율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다만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증가율이 한쪽이 다른 쪽을 앞서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났다. 1987년까지는 두 증가율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민주화(1987년)이후 노사분규가 분출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을 앞질렀고, 외환위기(1997)의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속에서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뒤지는 사태가 2010년까지 이어졌고, 그 후에 다시 역전되었다. 노동생산성보다 임금 증가가 뒤진 시기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았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는 반대의 상황이었으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우위가 계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러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추이에 대응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더해져서 빠르게 상승하였다. 여기서

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추세를 강조하는 연구가 많지만, 이용한 산식의 문제로 인 해 하락의 폭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러 한 기능적 소득분배의 추이는 최상위 소득집중도의 동향을 잘 설명하지만, 보다 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소득분배 지표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노동(또는 자본)소득분배율과 과세자료나 가계조사로 추정한 소득분배 지표 간에는 자본소득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전술한 기업의 사내유보 는 국민계정에서는 자본소득으로 파악되지만, 과세되거나 조사되지 않아 과세자료와 가계조사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22) 따라서 국민계정으로 접근한 기능적 소득분배와 개인 간 소득분배의 상관관계를 보다 엄밀히 보기 위해서는 두 지표의 소득 범위를 맞출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23)

본고의 추정 결과는 자영업에 관해 데이터의 한계로 가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비해 영 업잉여가 2.32배 높다는 가정을 하였다. 이것은 2011년 이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를 이용한 것이지만, 그 이전 시기에도 이 격차가 유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자영업자 중에서 준법인기업의 영업잉여를 그들이 인출한 소득으로 가정하였는데, 인출되지 않은 영업잉여가 있을 수 있어 그 만큼 과소평가되었다. 자영업자 중 고용 주와 그 가족종사자의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의 평균 피용자보수로 가정한 것도 그러 하다. 이들이 모두 추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1. 고용노동부, 『임금구조실태조사』(마이크로 데이터); 『고용형태별임금실태조사』(마이크로 데이 터).
- 2. 김낙년,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한국경제포럼』, 제11권 제1호, 2018, pp. 1-32.

<sup>22)</sup> 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도 자본소득이지만, 과세 자료나 가계조사에서는 개인의 소득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들은 자본소득이지만 최상층에 집 중되는 배당과 달리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sup>23)</sup> 소득분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세자료와 가계조사의 소득을 국민계정의 소득개념에 접근시 켜 micro data와 macro data의 정보를 정합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분배국민계정(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 DINA)을 추정할 수 있는데 (Blanchet, Chancel, Flores, Morgan, 2021), 한국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DINA를 추계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 3. 김유선,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KLSI 이슈페이퍼』, 제108호, 2019, pp. 1-7.
- 4. \_\_\_\_, 『한국의 노동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 5. 박정수, "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4호, 2020, pp. 27-68.
- 6. 박정수,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1호, 2019, pp. 81-112.
- 7. 박종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KIF 연구보고서 2013-08, 한국금융연구원, 2013.
- 8. 이강국,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2 호, 2019, pp. 73-94.
- 9. 이병희,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 25-42.
- 10. 조태형, "한국의 경제성장 및 실질소득 증가 요인 분해: 1970-2014,"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1. 주상영·전수민,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제43 권, 2014, pp. 31-65.
- 12. \_\_\_\_\_\_\_, "한국경제의 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통계해석 논란에 대한 견해," 서울사 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문재인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9, pp. 1-15.
- 1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 데이터).
- 14. \_\_\_\_, KOSIS.
- 15. 한국은행, ECOS.
- 16. 홍민기, "최상위 임금비중의 장기추세(1958-2013),"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1호, 2015, pp. 191-220.
- 17. Acemoglu, D. and P. Restrepo, "The Race Between Man and Machine: Implications of Technology for Growth, Factor Shares,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8, No. 6, 2018, pp. 1488-1542.
- 18. Bengtsson E. and D. Waldenström, "Capital Shares and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Long Run,"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78, No. 3, 2018, pp. 712-743.
- Blanchet, T., L. Chancel, I. Flores, and M. Morgan, "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 (DINA) Guidelines 2020: Methods and Concepts Used in the World Inequality Database," World Inequality Database.
- Bridgman B., "Is Labor's Loss Capital's Gain? Gross versus Net Labor Shares," *Macroeconomic Dynamics*, Vol. 22, 2018, pp. 2070-2087.
- 21. Cette, G., L. Koehl, and T. Philippon, "The Labor Share in the Long Term: A Decline?" *Economics and Statistics*, 510-511-512, 2019, pp. 35-51.
- 22. Elsby, M., B. Hobijn, and A. Sahin, "The Decline of the U.S. Labor Shar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3.
- 23. Feldstein M., "Did Wages Reflect Growth in Productivity?" NBER Working Paper 13953, 2008, pp. 1-8.
- 24. Francese M. and C. Mulas-Granados,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and Its Role in Explaining Inequality," IMF Working Paper, 2015, pp. 1-33.
- 25. Gutiérrez G. and S. Piton, "Revisiting the Global Decline of the (Non-housing) Labor

-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Vol. 2, No. 3, 2020, pp. 321-38.
- 2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derstanding the Downward Trend in Labor Income Shares,"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 27. Johnson, G.,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850–1952,"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5, No. 2, 1954, pp. 175–182.
- 28. Karabarbounis, L., and B.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29, No. 1, 2014, pp. 61-103.
- 29. Koh D., R. Santaeulàlia-Llopis, and Y. Zheng, "Labor Share Decline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Capital," *Econometrica*, Vol. 88, No. 6, 2020, pp. 2609–2628.
- 30. Krueger A.,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 and Proceedings*, Vol. 89, No. 2, 1999, pp. 45-51.
- 31. Lawrence R., "Does Productivity Still Determine Worker Compensation? Demestic and International Evidence," in M. Strain ed., The US Labor Market: Questions and Challenges for Public Polic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16.
- 32. Piketty, 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정경덕 외 역,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 33. Piketty, T. and G. Zucman,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9, No. 3, 2014, pp. 1255-1310.
- 34. Rognlie, M., "Deciphering the Fall and Rise in the Net Capital Share: Accumulation or Scarcit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46, No. 1, 2015, pp. 1-69.

#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Labor Productivity, Wages, and Labor Income Share

Nak Nyeon Kim\*

###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debates (Park Jongkyu, 2013; Park Jungsoo, 2019; Kim Yu Seon, 2019; Joo Sangyong and Jeon Su Min, 2019; Lee Kang-Kook, 2019; Park Jeong-soo, 2020) surrounding labor productivity, wages, and labor share in Korea. Self-employment is important in this debate. However, previous studies omitted quasi-corporations from the scope of self-employment income and included operating surplus of housing unrelated to self-employment, but this is corrected here. And whil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gap between real GDP per employed person and real wage per worker (divided by consumer price index) has widened significant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1997) o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such gap disappears when labor productivity and real wages are compared on a consistent basis. Looking back to 1975, periods in which real wage growth was faster than labor productivity alternated between 1987 (democratization), 1997 (financial crisis), and 2010, respectively. The average rate of increase of both over the entire period was balanced. Reflecting this trend, the labor income share also rose, then fell, and recently turned to rise again. This trend in the labor income share explains well the trend of the top income share relatively well, but it is found to have poor explanatory power in the income distribution index including the wider class.

Key Words: labor productivity, wage, labor income share

JEL Classification: D33, E24, E25

Received: Dec. 27, 2022. Revised: Feb. 9, 2023. Accepted: March 10, 2023.

<sup>\*</sup>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Phone: +82-2-2260-3273, e-mail: nnkim@dongguk.edu